

###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자 판결 (93도1689)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자 판결 (92노5251)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9.자 판결 (91고단9700)

####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1994. 4. 26일 이○○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 불벌죄에 준용되는 지 여부가 주된 논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3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

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피고 이○○는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가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복수한 후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작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인 조○○, 이△△는 이 이야기를 아무 확인절차없이 레저신문, 주부생활, 웅진여성에 게재하였다.

이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김 의 전 보좌관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법원은 검사의 기소 이후 고소인 차 (김 의 처), 김 (김 의 동생), 최 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고소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며 항소를 하였다. 2심 법원도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68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 선고, 92노5251 판결

**주 문** :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 의 전 보좌관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고소가 있어

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인데, 고소인 차 (김 의 처), 김 (김 의 동생), 최 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 원심은, 위 고소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서만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이 반의사불벌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만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고소불가분에 관한 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최 , 남 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인 위 조○○, 이△△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형법이 규정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같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고, 비록 “고소”는 수사 또는 소송을 개시, 진행시키거나 하는 적극적인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인데 반하여, “명시한 의사”는 일단 개시되고 성립한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발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소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로서 그 지향하는 법적효과가 다소 상반된 것이기는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의미하는 “명시한 의사”가 지향하는 법적효과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으며 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327조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부존재 또는 고소취소”를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 의사”는 모두 실제적 심판의 조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단지 전자는 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나 후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

는 것으로 구별되는 이외에는 그 법적성질 및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종래 친고죄의 운영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창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할 경우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소추권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제233조가 고소와 고소취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이 원칙이 배제된다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같은 법 제233조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제1심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적용 또는 준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금지에 관한 제233조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의 불비인지는 일단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법이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추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올 경우에 그때에 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 9. 18. 형법 개정시 구 형법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창설한 것으로서, 위의 이유 중 첫째의 것은 없고, 친고죄 중 두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 중 상대적으로 덜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는데도 이를 친고죄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여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소추, 처벌을 할 것이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는 구태여 소추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나 방법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점에서는 친고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친고죄는 위에서 본 첫째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유형이 주로 있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면 되는 것이고,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친고죄에 고소나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친고죄의 이러한 특질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위의 첫째의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위와 같은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의사표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게 할 수도 있고 범인에 대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며,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에 차등을 둔다고 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어느 경우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그 제232조 제 1, 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위 제 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친고적인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6.

재판장 대법관 김 석 수  
주 심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정 귀 호

## 2심 判 決 文

**사 건** : 92노525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전 주간연예스포츠 기자

**항 소 인** : 검사

**검 사** : 한찬식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9. 선고, 91고단 9700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주간 '연예스포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조○○, 같은 이△△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기사를 월간잡지인 응진여성 12월호에 게재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망 김 ○○ 및 최 ○○,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망 김 ○○의 친족인 고소인 차 ○○와 김 ○○이 각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최 ○○,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 바, 첫째 위 고소인들은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위와 같이 고소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망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 위하여는 판결이유에서 고소불가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233조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최 ○○, 남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친고

죄에 있어서와 같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외한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피고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이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아무런 이유 실시없이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셋째 이 사건 피해자 최○, 남○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및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고죄에 한하여만 고소불가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위 고소불가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일부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 2. 당원의 판단

### 가. 법률의 규정

그러므로 우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및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고소불가분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남○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1992. 2. 21.에, 같은 최○은 같은 해 4. 6.에 각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 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를 기소하여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죄를 논할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서 이른바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위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또는 후환의 두려움에서 고소를 주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여 놓아도 그 기능을 다하기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비록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소추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범죄유형으로서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소송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공통점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전자의 ‘고소’는 수사 또는 소송을 개시·진행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인데 반하여, 후자의 ‘명시한 의사’는 일단 개시되고 성립한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발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소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로써 양자 상호간에 그 지향하는 법적효과가 다소 상반된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가 지향하는 법적효과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에 있어서와 같으며, 또한 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의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327조에서는 제5호에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제6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는 각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부존재 또는 고소취소’는 그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 의사'는 모두 실체적 심판의 조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단지 전자는 "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이나 후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경우로 구별되는 이외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그 법적 성질 및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종래 친고죄의 운영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새로 형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창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함에 반하여,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가 고소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할 경우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소추권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보여지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친고죄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소추권 또는 형벌권의 행사가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되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라. 나아가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고소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판결이유에서 고소인 차, 감 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한 고소취소가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

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고소인 최 ○, 남 ○ 의 위 조○○, 이△△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해자 망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최 ○, 남 ○에 대한 명예훼손의 각 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위 망 김 ○의 친족인 고소인 차 ○, 김 ○ 및 피해자 최 ○, 남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또는 준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여겨지고, 또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다른 공범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불비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이 점 항소는지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0

재판장 판사 김 연 태  
 판사 변 현 철  
 판사 오 중 윤

1심 判 決 文

사 건 : 91고단9700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이○○ 전 주간연에스포츠키자

2. 조○○ 웅진여성 기자

3. 이△△ 웅진여성 편집인

검 사 : 표 성 수

변호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김병재, 김주현(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천기홍(피고인 2, 3을 위하여)

**주 문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는 1989. 4. 19.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범죄경력 7회 더 있고, 1990.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간 “레저신문”의 취재 기자로 근무하고 같은 해 12. 15.부터 1991. 10. 30까지 주간 “연예스포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써 오던 자, 피고인 조○○은 1989. 4. 경부터 1991. 3. 31경까지 월간지 “주부생활”의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같은 해 4. 1.경부터 주식회사 웅진문화사에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 1. 창간된 월간지 “웅진여성”의 취재기자로 일하던 자, 피고인 이△△는 1979. 2.경부터 1991. 2. 28.까지 월간지 “여성중앙”, “라베르”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3. 1부터 주식회사 웅진문화사 여성잡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 1. 창간된 월간지 “웅진여성”의 편집인으로 일하던 자인 바,

피고인 이○○는 1991.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의 1 동원빌딩 소재 웅진문화사 여성잡지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조○○, 이△△로부터 웅진여성 12월호에 실을만한 특종기사감이 없냐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설을 쓰기 위하여 꾸민,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가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복수한 후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접대부의 친구, 어머니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제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접대부가 망 김 ○○○ 등과 성관계를 맺은 내용을 기록한 일기장과 저명인사들의 명단이 기록된 수첩이 있다고 말하고, 조○○ 등이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공소외 ○○○에게 자신이 꾸민 내용대로 일기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동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위 접대부가 작성한 것처럼 같은 달 14. 12: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소재 용산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조○○ 등에게 보여주어 복사케하고, 피고인 조○○ 등 이△△는 위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의 복수극 내용이 이미 1990. 7. 12.자 레저신문과 주부생활지에 게재되었고 당시 위 기사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1991. 12월호에 웅진여성의 머릿기사로 게재하려는 욕심으로 위 이○○의 말에 대한 아무런 추적취재도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었던 저명인사의 명단이 적힌 수첩의 존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접촉하기는커녕 그 실존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받은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의 일기장이라는 노트 중의

필체, 요일기재방법, 유명인의 신상에 대한 표현 등에서 진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더구나 일기장 사본에 이름이 현출되어 있는 전 국회의원 망 김 (1991. 8. 19. 사망)은 사망 당시 신문 등지에서 지병인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어 에이즈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위 이○○의 말이 확인할 근거없는 허구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 본인 또는 그 질병 자체보다는 에이즈 환자 본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람 수 또는 그 질병의 현실화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접대부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과장하여 그들을 비방하려는 의도하에 이를 기사화하여 게재하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모의하여 피고인 조○○은 1991. 11. 24.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웅진문화사 여성잡지국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들은 내용과 일기장을 토대로 “에이즈 발병 후 2년동안 관계한 장관, 국회의원, 기업인, 변호사, 의사, 교수, 대학생 등 40명 명단 비밀일기 최초공개”라는 제목으로 “본지 기자 60일 추적취재”, “대스타를 꿈꾸던 미모의 여배우가 유명인사의 노리개로 전락한 후 에이즈에 걸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몹쓸 병을 옮겨준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2년간 40여명의 유명인사를 비롯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었다. 얼마전 그녀와 관계했던 유명인사가 비명에 죽음으로써 그녀의 에이즈 악령이 지금도 우리곁에 있음을 실증해 주었다… 본지는 유명인사와 관계를 기록했던 그녀의 일기와 명단이 적힌 수첩을 입수함으로써…”라고 부재를 기재하고, 본 내용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본지는 오랜 추적을 통해 에이즈 배우의 신상 일체, 발병 이후 2년간 남자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펼치며 썼던 그녀의 일기,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유명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 그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에이즈의 복수극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름만 대면 단번에 알만한 유명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혀 있었다. 또 수첩에는 그들의 전화번호가 깨알같은 글씨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40여명에 달하는 유명인 명단은 고위 공무원에서 국회의원, 사장, 현직 법조인, 의사, 교수 등이었다.” “2년간의 일기 속에서 그녀와 관계한 국회의원만 10명에 달한다.”라고 기재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체화시킨 다음 계속해서 망 김 에 대하여 “그녀의 일기 중에는 상당량은 K의원과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실제로 그녀는 유명 국회의원 K모 씨와 H 아파트에 방을 얻어놓고 1년간 동거를 했다고 정 씨는 증언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그 제물이 되어 얼마전 세상을 떠났다”, “실제로 그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유명인사가 죽음을 당했으니…”라고 기재하고 이○○로부터 교부받은 일기장 사본들을 게재하면서 “…김○○ 한 때 사랑하며 죽자살자 같이 살았던 그 김. 그가 생각났다. 그의 보좌관인 최모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았다. 모 여당 국

회의원이 되셨단다. 국회의원 좋지...”, “드디어 만났던 내가 사랑했던 사람 김 ○○ 그를 만났다. 그이 보좌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어야지 그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나의 사랑 김○○ 너 또한 나로인해 …아깝지만 할 수 없지...”, “...그의 보좌관인 최○○를 통해 다시 만났다. 나의 넘을, 그러나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라고 된 것을 게재하고, 그 내용 중에 김 ○○이라는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러 전체를 동그라미로 서너 번 치는 식으로만 지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일기장 사본 자체에는 단순히 김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마치 이름 석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그라미 2개를 그려넣고 겹쳐 칠하여 게재함으로써 실제 저명인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 특정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망 김 ○○의 보좌관 최 ○○이 김 ○○과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와의 성관계를 소개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피고인 이○○가 주간 레저신문 1990. 7. 12.자에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할 때 사용한 피해자 남 ○○의 눈을 가린 신문 사진을 이○○로부터 승낙을 받아 복사하여 삽입하고 사진 밑에 “고급풀걸로 출입했던 D요정 앨범에서 입수한 그녀의 사진”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동인이 에이즈에 걸린 후 복수극을 벌인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하고, 사진 식자화한 원고를 피고인 이△△, 이○○가 같이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웅진여성 12월호에 1권 220~228페이지에 실도록 편집하고 책자 10만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의 전 보좌관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형법 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들의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차 ○○, 김 ○○, 최 ○○ 등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2. 4. 6.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같은 해 2. 21.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9.

□

판사 조 연 호

피고가 쓴 기사내용이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대법원 1996. 8. 23.자 판결 (94도3191)

事實概要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96년 8월 23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이 기자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임수경 양 방북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데 대한 의혹을 다룬 것이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안기부 여직원인 도 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한겨레신문 1989년 6일자 11면에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 씨의 의문사와 관련,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제하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안기부 요원인 도씨가 동행했다고 보도하면서 도씨가 이씨의 죽음에 관련된 듯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뒤 93년 1심과 94년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도31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신문기자)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 선고, 93노808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 1. 제 1, 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원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 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며 이 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 아무개(23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22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 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다」,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 아무개였다고 진술했었다」,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라고 말하였다」,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1심 거

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변사 전후의 이 의 행적과 밝혀진 사망원인, 도 와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 최 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의 반복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정 및 이 사건 보도내용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었던 이 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재하여 보도하게 한 이 사건 기사 전체적 취지는 변사체로 발견된 위 이 사망 직전에 동행한 일행 중에 안기부직원 신분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를 안기부 직원인 위 도 가 정치공작에 의하여 위 이 과 동행하다가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기사내용 전체가 허위보도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이 신문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의 목격자로 지목된 공소의 최 가 당초 진술을 반복하여 위 도 가 이 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거부로 목격자인 이 와 최 의 진술조서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면담한 공소의 이 는 수사기관에서 그때까지도 거룻배를 이용하여 이 을 변사체로 발견된 현장 부근까지 실어다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 과 동행한 일행 중에 여자 1명,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여자가 이 의 도선비까지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보도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취재현장에 내려가기 전에 변사사고 직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을 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위 최 를 찾아낸 바 있는 중앙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조사내용을 전해들었고, 피고인에 앞서 이 의 변사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한 일이 있는 한겨레신문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요원인 도 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 거문도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의 그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 직원인 도 가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가는 배에 위 이 과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 과 도 의 일행이 거문도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반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1996. 8. 23.

□

재판장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안 용 득  
 주 심 대법관 지 창 권  
 대법관 신 성 태

2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자 판결 (93노8080)

1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자 판결 (91고단4995)

2심 및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p. 297~312 참조

## IV. 헌법소원사례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한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자 결정 (95헌바25)

### 事實概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 대법관)는 1996년 4월 25일 국민일보사측이 제기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의해 재판한다」는 규정이 언론기관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언론자유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인 박 씨가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5카합1256), 국민일보사측은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국민일보사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인 국민일보사측은 청구이유에서 「정간물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이 아니라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져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이로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달

리 가치분절차 규정에 의해 재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론사측에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1년 9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는(89헌마165결정)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피해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독자들이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므로 가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 決定文

**사 건 :** 95헌바2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차일석

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관련소송사건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 1256 정정보도게재

**주 문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975호)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3. 21.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국민일보에 청구외 박 이 본부장으로 있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등으로 생명을 매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그러자 위 박 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5카합1256). 청구인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언론기관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

헌규정이라고 주장하여 동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5카기471).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5. 7. 14. 위 박· 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7.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5.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제정, 법률 제397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인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 12. 30.) 제정되고 1996. 7. 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5146호에는 제19조 제목을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으로 하고 본항 중 「정정」을 「반론」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요지

#####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단순히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이 아니라 법상의 문언 그대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내용의 실질적인 진위 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특수한 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달리 정식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

기간행물의 발행주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치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결과 법원은 보도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조차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 대하여는 진정한 알 권리 즉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1991. 9. 16.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1994. 9. 15. 위와 같은 합헌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대부분이 교체되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한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1. 9. 16. 법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이래 헌법환경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

다. 공보처장관의 의견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매스미디어가 거대한 자본과 인원을 확보하고 정보의 대량전달기술을 구사하는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잘못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거대언론의 엄청난 공시효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론피해 구제제도로서 도입된 반론권 즉 반론보도청구권이고, 이러한 반론권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 등 종래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성여부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법규정상 「정정보도청구」라는 문언은 법의 전체적인 취지나 다른 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명 「반론보도청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어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문상의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여 동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성질까지도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반론권제도는 빠른 전파속도(속보성)와 넓은 도달범위(광역성)를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관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취지에도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어 언론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반론권제도는 그 본질상 원래의 보도내용의 허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래의 보도내용이 진실일 경우에 있어서 반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 언론의 자유보장과 불합리한 충돌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1. 9. 16. 선고한 89헌마165결정에서 법 제19조 제3항이 합헌임을 선언(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 (2) 심판절차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 규칙 제1003호, 이하 심판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별개의 본안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심판대상조항 단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살피건대,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심판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심판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청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89헌마165 결정 이후에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위 결정의 주문 또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은 앞서 본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 4. 25.

□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도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도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 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 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은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公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

事者が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誠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 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費用으로서 積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

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 報道的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 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ados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ados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행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ados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ados 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ados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相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와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4, 6011~3 725-0050 FAX. 730-9420·5487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18(백산빌딩 8층)	(051)759-7083~4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9(3·1빌딩 301호)	(053)755-0108~9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1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대양빌딩 6층)	(0361)55-2878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37-5(성화빌딩 302호)	(0431)52-1250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비사별빌딩 8층)	(0652)88-001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63-1787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22-3328

## 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4輯

(言論仲裁 통권 63호 부록)

1997년 6월 20일 인쇄

1997년 6월 30일 발행

編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查研究室

發行 言論仲裁委員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전 화 : 732-6031~4, 732-6011~3,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